

책임의료기관 지정 · 확충 및 권역-지역-기초 공공의료 연계 방안 논의를 위한 권역별 2차 워크숍

| 일 시 |

2019년 3월 18일(월), 19일(화), 25일(월), 26일(화) 10:00

| 장 소 |

서울 스카й파크 호텔 14층 킹스홀Ⅲ

워크숍 개요

- (일시) 2019. 3. 18(월)~19(화), 25(월)~26(화) / 10:00 ~ 17:30

구분	일시	시도	참석인원 (예정)
1일차	3월18일(월) 10:00~17:30	충북, 충남, 대전, 세종	47명
2일차	3월19일(화) 10:00~17:30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52명
3일차	3월25일(월) 10:00~17:30	전북, 전남, 광주, 제주	50명
4일차	3월26일(화) 10:00~17:30	서울, 경기, 강원, 인천	60명

- (장소)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현대시티아울렛 14층), 킹스홀 III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 (참석대상)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시·도 과장,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사업실장,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연구진 등
- (주요내용)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방안, 권역-지역-기초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운영 및 지원방안 논의 등

워크숍 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0:00~10:10('10)	인사말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10:10~10:20('10)	워크숍 주요내용	연구진
10:20~12:30('110)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방안, 권역-지역-기초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운영 및 지원 방안 설명 & 쟁점 사항 질의 응답	연구진
12:30~13:30('60)	점심	
13:30~15:00('90)	시도별 논의 (시·도,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지원단, 연구진)	참석자 전원
15:00~15:30('30)	휴식	
15:30~17:00('90)	논의 종합(각 시도별 의견 발표)	
17:00~17:30('30)	워크숍 마무리	연구진

Contents

1.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방안 연구	1
2. 권역-지역-기초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운영 및 지원 방안	23

01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방안 연구

2차 워크숍 (1, 2세부)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방안 연구

2019.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연구 중인 내용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대외주의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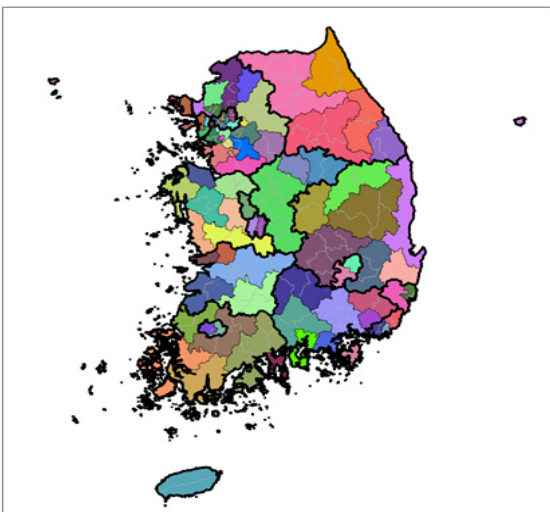
목 차

1. 중진료권 설정(안)
2. 책임의료기관 수행 기능
3.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청 및 지정 요건
4. 책임의료기관 지원 방안
5. 관리 및 운영 방안

1. 중진료권 설정(안)

1) 시도 의견수렴을 통한 진료권 도출

▶ 의견수렴을 통한 진료권 도출(안) (82개)



※ 상기 진료권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진료권(안)별 상세현황

구분	진료권명	인구	RI	시군구1	시군구2	시군구3	시군구4	시군구5	시군구6	시군구7	시군구8
1	서울도심	516,642	43.70	종로구	중구	용산구					
2	서울서북	1,190,372	42.51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3	서울동북	3,149,088	66.06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4	서울서남	3,018,759	65.23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영등포구	
5	서울동남	2,136,559	68.86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6	부산서부	979,668	48.95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7	부산중부	1,529,232	72.88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8	부산동부	997,099	54.70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				
9	대구동북	1,525,949	73.03	동구	서구	북구	중구	수성구			
10	대구서남	962,545	63.07	남구	달서구	달성군					
11	인천서북	571,672	50.25	서구	강화군						
12	인천동북	886,244	57.04	부평구	계양구						
13	인천중부	619,154	56.38	중구	남구	동구	옹진군				
14	인천남부	842,892	52.64	연수구	남동구						
15	광주광서	709,049	62.22	광산구	서구						
16	광주동남	761,746	68.93	북구	동구	남구					
17	대전서부	826,552	63.80	유성구	서구						
18	대전동부	693,447	57.81	대덕구	동구	중구					
19	울산서남	456,308	38.51	울주군	중구						
20	울산동북	710,457	73.94	남구	북구	동구					

※ 상기 진료권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진료권(안)별 상세현황

구분	진료권명	인구	RI	시군구1	시군구2	시군구3	시군구4	시군구5	시군구6	시군구7	시군구8
21	세종시	202,462	11.73	세종시							
22	수원시	1,180,736	73.16	수원시							
23	성남시	1,287,892	71.95	성남시	광주시						
24	의정부시	822,232	62.98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25	안양시	854,000	60.48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26	부천시	343,782	70.69	부천시							
27	광명시	642,887	39.85	광명시							
28	평택시	1,099,842	58.11	평택시	안성시						
29	안산시	1,021,188	68.91	안산시	시흥시						
30	고양시	1,009,192	71.59	고양시							
31	남양주시	208,589	51.37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32	오산시	285,673	41.42	오산시							
33	군포시	180,859	42.91	군포시							
34	하남시	974,691	21.88	하남시							
35	용인시	783,327	32.22	용인시							
36	파주시	421,003	36.21	파주시							
37	이천시	318,648	45.03	이천시	여주시						
38	김포시	351,628	47.38	김포시							
39	화성시	599,923	41.46	화성시							
40	포천시	155,056	34.15	포천시							

※ 상기 진료권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진료권(안)별 상세현황

구분	진료권명	인구	RI	시군구1	시군구2	시군구3	시군구4	시군구5	시군구6	시군구7	시군구8
41	춘천시	446,262	71.23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42	원주시	462,146	74.32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43	강릉시	254,094	70.78	강릉시	정선군						
44	동해시	172,620	46.44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45	속초시	212,310	38.01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46	청주시	1,258,764	73.19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옥천군	영동군
47	충주시	208,244	64.85	충주시							
48	제천시	167,339	58.80	제천시	단양군						
49	전주시	907,569	79.88	전주시	아산시						
50	공주시	153,891	27.51	공주시	계룡시						
51	보령시	161,067	40.84	보령시	서천군						
52	서산시	232,464	47.01	서산시	태안군						
53	논산시	249,804	39.69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54	당진시	164,330	43.58	당진시							
55	홍성군	211,085	35.89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56	전주시	884,461	83.54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57	군산시	277,473	65.32	군산시							
58	익산시	302,677	73.26	익산시							
59	정읍시	233,760	53.76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60	남원시	168,357	34.79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 상기 진료권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진료권(안)별 상세현황

구분	진료권명	인구	RI	시군구1	시군구2	시군구3	시군구4	시군구5	시군구6	시군구7	시군구8
61	목포시	453,105	73.24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62	여수시	289,561	70.10	여수시							
63	순천시	572,775	72.07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64	나주시	242,106	40.89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65	해남군	209,600	51.84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66	영광군	137,310	37.46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67	포항시	619,019	70.07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68	경주시	260,389	53.11	경주시							
69	안동시	267,178	63.60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70	구미시	785,324	57.83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71	영주시	190,010	31.46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72	상주시	177,343	49.26	상주시	문경시						
73	경산시	399,770	37.96	경산시	청도군	영천시					
74	창원시	1,230,918	78.01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75	진주시	428,713	78.29	진주시	산청군	하동군					
76	통영시	193,730	58.93	통영시	고성군						
77	사천시	161,494	45.72	사천시	남해군						
78	김해시	527,942	65.77	김해시							
79	거제시	251,490	61.19	거제시							
80	양산시	413,812	55.30	양산시	밀양시						
81	거창군	152,513	37.61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82	제주시	624,845	84.78	제주시	서귀포시						

※ 상기 진료권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진료권 간 인구편차 고려

- ▶ **인구 상한선이 없는 이유로 진료권 간 인구 편차가 발생**
 - ▶ 진료권 인구 상한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개수를 인구 수에 비례하여 배치 필요
 -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한 응급의료 (대)진료권의 경우, 인구 상한을 두지 않고 진료권 마다 기관 수를 인구 수 비례적으로 배치
- ▶ **인구 수를 고려한 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개수를 차등화 검토**
 - ▶ 특·광역시·경기도 진료권 내 인구 50만명 당, 그 외 인구 30만명 당 배치
 - ▶ 중진료권 82개별 1개 이상, 최대 지역책임의료기관 135개 지정 필요

2. 책임의료기관 수행 기능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안)

- ▶ **필수의료 국가보장 강화 및 급성기 공공병원의 표준 정립**
 - ▶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 ①진료[권역응급/권역심뇌혈관/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중환자실 등 **의무 배치**(어린이병원 등은 지역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권역 내 협력병원에 배치 가능)] + ②연계·협력 + ③기획·교육·연구 + ④공공성강화
 - ▶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 ①진료[포괄2차 진료, 지역응급/지역심뇌혈관/지역모자센터 등은 **의무 배치**(재활 등은 지역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협력병원에 배치 가능)] + ②연계·협력 + ③기획·교육 + ④공공성강화

*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최적의 배후진료, 환자 중심의 지역연계, 기획 및 조정 등의 거버넌스, 투명한 운영 등 기능을 갖춘 병원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책임의료기관 역할 (●: 의무/조건부¹⁾ △: 선택²⁾ X: 해당없음)

1) 현재는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의무적 배치 필요 2)지역의 완결성을 검토 협력병원에 설치 및 연계 가능

구분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무/선택	기능	의무/선택	기능
필수의료 (진료)	배후진료역량	●	3차급 중증질환진료상중 또는 3자이상	●	2차병원 급성기 진료 (포괄2차 이상)
	응급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배치
	심뇌혈관	●	권역심뇌혈관센터	●	지역심뇌혈관센터 배치
	외상	●	권역외상센터	X	
	중환자	●	중환자실	●	중환자실
	모성(분만)/신생아	●	권역고위험모자신생아치료센터 (권역 모자의료센터)	●	지역고위험모자신생아치료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어린이	●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	-
	재활	△	권역재활병원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X	-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감염	△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시도감염병관리 병원	△	지역감염병관리병원

<표 계속>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책임의료기관 역할 (●: 의무/조건부¹⁾ △: 선택²⁾ X: 해당없음)

1) 현재는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의무적 배치 필요 2)지역의 완결성을 검토 협력병원에 설치 및 연계 가능

구분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무/선택	기능	의무/선택	기능
연계·협력	필수의료 연계 협력	●	권역책임 간, 상중 간 협력 필수의료 권역센터 간 협력	●	지역책임 간, 중합 간 협력 필수의료 지역센터 간 협력
	퇴원환자연계	●	권역-지역 퇴원 연계	●	지역-기초 퇴원 연계
	일차의료연계	△	중증 일차의료연계	●	지역-일차의료 연계
	의료복지연계	●	중증 취약계층 연계	●	취약계층 연계
	진료정보교류/	●	진료정보, 의뢰회송	●	진료정보, 의뢰회송
기획/조정 교육/연구	공공의료 기획·조정·계획수립	●	권역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권역 주요 보건의료 문제 분석 및 개선 계획, 필수의료 제증조정계획)	●	지역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중진료권 주요 보건의료 문제 분석 및 개선 계획)
	교육	●	지역책임 교육파견	●	중진료권 단위 대상 교육
	연구	●	필수중증의료 관련 연구	X	
공공의료사업	적정진료, 공공사업 등	●	표준진료지침 개발 권역단위 공공의료사업 지자체사업위탁 취약계층	●	표준진료지침 적용, 지역 단위 공공의료사업, 지자체 사업위탁, 취약계층

3.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청 및 지정 요건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청 요건(안)

▶ 지역 책임의료기관

-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 ▶ 단, 병원급이라도 시도지사의 육성 의지가 확고한 경우엔 신청 가능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안)

▶ 배후 진료 역량 (현재 기준)

- ▶ 포괄 2차 병원의 하위 20% 값을 기준*으로 최소 요건
- ▶ ①DRG 질환군 444개 이상, ②재원일수 9일 이하, ③전문질환군 비율 5% 이상, ④수술비율 16% 이상, ⑤최빈MDC 비율 26%이하
- ▶ 5개 진료 수준 지표 중 4개 이상 충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정보(2016.12. 기준)

* 입원병상: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신생아중환자, 음압, 비음압), 무균치료실 포함(정신과폐쇄 및 특수진료실(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응급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강내치료실 등) 제외)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안)

▶ 300병상 +

▶ 진료과

▶ 주요진료과 16개 이상 운영

주요 진료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 필수 기능(또는 도입 조건부)

- ▶ 지역응급의료센터 인력, 시설, 장비 지정기준 준용)
- ▶ 지역심뇌혈관센터 (향후 발표되는 인력, 시설, 장비 지정기준 준용)
- ▶ 지역모자의료센터 (향후 발표되는 인력, 시설, 장비 지정기준 준용)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안)

▶ 신포괄수가제 도입(또는 도입 조건부)

▶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신포괄수가 항목 검토

영역	최대비율	세부지표 (비율)	영역	최대비율	세부지표 (비율)
참여	신포괄수가제 참여	3%	참여	(3.0)	
	자료제공	2%	수가자료	(0.5)	
			원가자료	(0.5)	
			진료비 청구심사자료	(0.5)	
			의료의 질 평가자료(외래포함)	(0.5)	
	자료의 질	1%	(원가) 자료의 정확도	(0.5)	
			(수가) 자료의 정확도	(0.5)	
효율성	경영성과률 ¹	5%	진료실적		
			경영수지	(5.0)	
			생산성		
효과성	간호등급	2%	간호등급	(2.0)	
	간호인력충당비율 ²	3%	운영 여부	(2.0)	
	신포괄정보관리	5%	병상점유율	(1.0)	
			의무기록 필수항목 기재율	(1.0)	
			진단코딩정확도 향상활동	(0.5)	
			진단코딩 청구정확도	(1.0)	
			환자안전 Alert시스템 운영 및 활용	(0.5)	
			환자인식시스템 운영	(0.5)	
			POA 청구정확도	(0.5)	
			표준진료지침(CP) 운영	(1.0)	
공공성	취약계층 진료	4%	의료급여(자상위 포함) 환자비율	(4.0)	
	취약지	1%	의료 취약지	(1.0)	
	필수시설	3%	중환자실 혹은 응급실 운영 여부	(1.0)	
			올업격리실 운영 여부	(1.0)	
			분만실, 호스피스병동, 재활의학과, 정신과병동 중 2개 이상 운영 여부	(1.0)	
	감염병 관리	1%	감염병표본관리 여부	(0.5)	
			격리병상이용률	(0.5)	
의료의 질	2%		재입원비	(1.0)	
			외래방문횟수비	(1.0)	
비급여 관리	3%		비급여 비중	(2.0)	
	2%		비급여 개선도	(1.0)	
			비급여 감소율 ³	(2.0)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안)

▶ 경영공시를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또는 도입 조건부)

▶ 운영현황 투명화를 위한 필수 사항만 공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의2 통합공시		구분	
항목	상세	지역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
2.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서, 수입·지출현황, 감면액	○	○
3. 임원 및 운영 인력 현황	임·직원현황	○	○
	신규채용, 노동조합 관련 현황	○	○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임원연봉, 직원평균보수,		○
	복리후생비		○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
6.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운영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	○
7.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운영진단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	○
8.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부, 지자체 검사 결과	○	○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의결 내용 및 원안 가결 여부	○	○
10. 감사결과 또는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결과, 조치계획	○	○
11.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시정요구 받은 내용 및 조치사항	○	○
12.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입찰 및 수의계약현황		○
13. 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하도록 요청한 정보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안)

▶ 이사회 구성의 공익성(또는 도입 조건부)

	영역	구체적 내용
거버넌스	이사회 구성	- 이사회 구성 * 친족 기타 특수이해관계인의 3분의 1 이하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 이상 *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1인 이상 * 지역보건의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지역주민 대표 위원회	- 지역주민 대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이 위원장을 맡고, 참석인원의 50% 이상이 지역주민 위원으로 구성 * 병원 운영, 사업계획, 환자 및 보호자 안전과 권익,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에 대한 요구 반영
평가	운영평가	-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평가 실시 * 진료서비스, 공공성, 운영행태, 경영성과 등 병원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 공공보건의료계획 실적 평가 실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가 수행
	지도감독	- 사업계획 및 예산안 도의회에 보고
	공개	- 업무 사항 등을 공시 * 예산 결산 공개 *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감사	- 결산서 회계감사
기타	의료기관회계 기준 적용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운영지침 준수	- 진료, 시설 및 장비 관리, 인사 관리 등 병원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안)

- ▶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현재 배후 진료역량 및 필수 의료기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정 가능
- ▶ 현재 배후 진료역량 및 필수 의료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병원 규모, 병원 운영 현황, 지자체의 육성 의지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안)

▶ 신축이 필요한 경우

- ▶ 공모 결과 미공모 지역
- ▶ 지정 평가에서 적정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지역
- ▶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지역

4. 책임의료기관 지원 방안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요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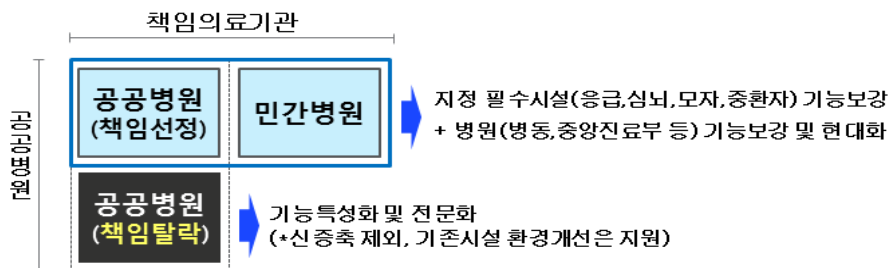
구분	지역책임의료기관
인력	-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인력 파견 - 공중보건장학의사 우선 배치
시설, 장비	- 책임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증축 또는 신축 지원 - 지역 책임의료기관 필수 기능(응급, 심뇌, 모자, 중환자)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 - 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병원(중앙진료부, 외래, 병동) 기능보강 및 현대화 지원
공공의료 연계·협력 기획/조정	- 지역 공공의료본부 설치 - 전담인력(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운영비 지원 - 지역 단위 공공의료협력사업 -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기획과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교육/연구	-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대상 신규 임상 교육, 보수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수가	-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확대 검토 - 의뢰회송 - 퇴원환자 연계 등 시범사업
평가가산	-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가점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안)

-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지원사업 확대 개편을 통한 인력 지원
 - 기존 개별 의료원과 대학병원간에 1:1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방식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 국립대병원이 1개에서 다수의 의료원을 총괄 책임
 -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이 계약을 맺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과목을 계약기간 동안 책임지고 지원
- 공중보건장학의사 우선 지원
 - 지역별, 의료기관별 필요인력을 추계하여 공중보건장학 인력 확대 추진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안)

- 기존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책임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전환
- 책임의료기관 필수 기능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병원 기능보강 및 현대화 지원
- 지역책임의료기관에 탈락한 공공병원은 기능특성화 사업으로 분야별 전문화 지원(병원 기능 유지 고려 기존시설 환경개선은 지원)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안)

구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민간)	지역책임의료기관 탈락 공공병원
지정필수 시설	응급의료센터	●	-
	심뇌혈관센터		
	모자의료센터		
	중환자실		
병원 기능보강 및 현대화	중앙진료부	●	○ (신·증축 제외)
	외래부		
	병동부		
	부대시설(기숙사, 장례식장, 주차장 등)	○ (기숙사만 지원)	○ (기숙사만 지원)
기능특성화	특정분야 전문화		●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협력 체계/수가 등 지원(안)

■ 권역 및 지역 공공의료본부 설치 운영비 지원

- 現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 지원 사업비' 확대를 통해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수가를 통한 지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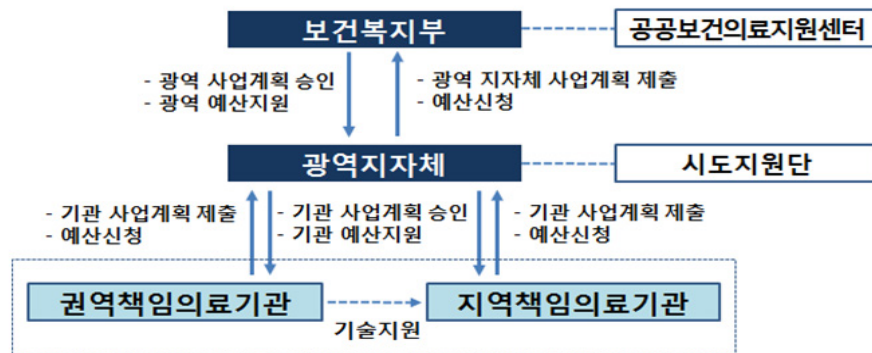
-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실폐괄수가 정책가산을 확대 협의
- 지역응급센터/지역심뇌센터/지역모자센터 운영, 퇴원계획 수립/지역 연계 지
- 필수의료기능 수행 센터별 운영비 지원

■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안)

- 지역책임의료기관 : 국비 50%, 지방비 50%

책임의료기관 지원체계(안)

- (광역지자체) 매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수행할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 광역지자체가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지원할 사업 및 예산 결정
- (보건복지부) 매년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책임의료기관 운영 사업계획 및 신청 예산을 평가하여 광역지자체별 사업 승인 및 예산 지원



5. 관리 및 운영 방안

책임의료기관의 책무성 (안)

■ 이사회 구성 등 거버넌스의 투명성

- 책임의료기관 투명성 및 지역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

구분	영역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거버넌스	이사회 구성	- 이사회 구성 * 진축 기타 특수이해관계인의 3분의 1 이하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 이상 *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1인 이상 * 지역보건의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 이사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명 이상 (보건소장 1인 포함) *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 비영리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 지역주민대표 1명 이상
	지역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참여	-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참여 * 권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전문가 등과 권역 공공보건의료계획, 정책 수립 등에 대한 논의	-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참여 * 권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전문가 등과 권역 공공보건의료계획, 정책 수립 등에 대한 논의
	지역주민 대표 위원회	- 지역주민 대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이 위원장을 맡고, 참석인원의 50% 이상이 지역주민 위원으로 구성 * 병원 운영, 사업계획, 환자 및 보호자 안전과 권익,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에 대한 요구 반영	- 지역주민 대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이 위원장을 맡고, 참석인원의 50% 이상이 지역주민 위원으로 구성 * 병원 운영, 사업계획, 환자 및 보호자 안전과 권익,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에 대한 요구 반영

책임의료기관의 책무성 (안)

■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기능 및 역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운영평가 등 수행

구분	영역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평가	운영평가	-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평가 실시 * 진료서비스, 공공성, 운영행태, 경영성과 등 병원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실시 * 진료서비스, 공공성, 운영행태, 경영성과 등 병원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 공공보건의료계획 실적 평가 실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가 수행	- 공공보건의료계획 실적 평가 실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가 수행
	경영평가	-	-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가 수행
지도감독		- 사업계획 및 예산안 도의회에 보고	- 사업계획 및 예산안 도의회에 보고 - 기관장 성과평가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행 - 인력 및 인건비 지자체 사전 승인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행
공개		- 업무 사항 등을 공시 * 예산 결산 공개 * 이사회 회의록 공개	- 업무 사항 등을 공시 * 예산 결산 공개 * 이사회 회의록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정보공개
감사		- 결산서 회계감사	- 결산서 회계감사 - 행정 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행 - 감사원 감사 *감사원법
기타	의료기관회계 기준 적용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운영지침 준수	- 진료, 시설 및 장비 관리, 인사 관리 등 병원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 진료, 시설 및 장비 관리, 인사 관리 등 병원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책임의료기관 평가(안)

■ 평가체계

- 기존의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체계(진료서비스, 공공성, 효율성, 책무성)를 활용하여 **책임의료기관 운영평가체계를 개발**

*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책임의료기관 운영평가 수행, 탈락된 기관은 기존 운영평가 수행

- **책임의료기관 운영평가는 필수요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진료인프라, 진료과정, 진료결과를 평가하고 기존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유도**

* 지정기준 모니터링 : DRG 개수 평균, 재원일수 평균, 전문질환군 비중, 수술비율, 최빈 MDC비율, 입원병상, 전문의 수, 간호사수

* 진료성과 측정 : 예방가능한 표준화 사망률, 필수의료 분야 RI 및 CI, DRG, 고위험 분만 건수, 저체중아 출생수

* 응급, 외상, 심뇌, 분만 등 필수의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 **책임의료기관으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성과 효율성 지표 적용**

*책무성 : 책임의료기관 준수 기준 모니터링, 정부정책 수행

*효율성 및 정부정책 반영 : 병상이용률, 경쟁입찰 시행률, 의약품 구매관리 등

책임의료기관 관리(안)

▪ 지정주기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5년 주기로 발표되기 때문에 주요 정책 및 지역환경 등을 고려하여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도 5년마다 재지정
- 운영평가 결과, 지정 기준 준수여부,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 여부 판단

▪ 지원근거

- 민간병원은 공익의료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지원
- (법률)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관련 규정, (시행규칙)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인력, 시설, 장비), 지정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마련

▪ 지정주체

- 권역책임의료기관
- 지역책임의료기관

02

권역-지역-기초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운영 및 지원 방안

2차 워크숍 (3세부)

권역-지역-기초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운영 및 지원 방안

경상대학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목차

-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관련
거버넌스
-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운영

목차

-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관련
거버넌스
-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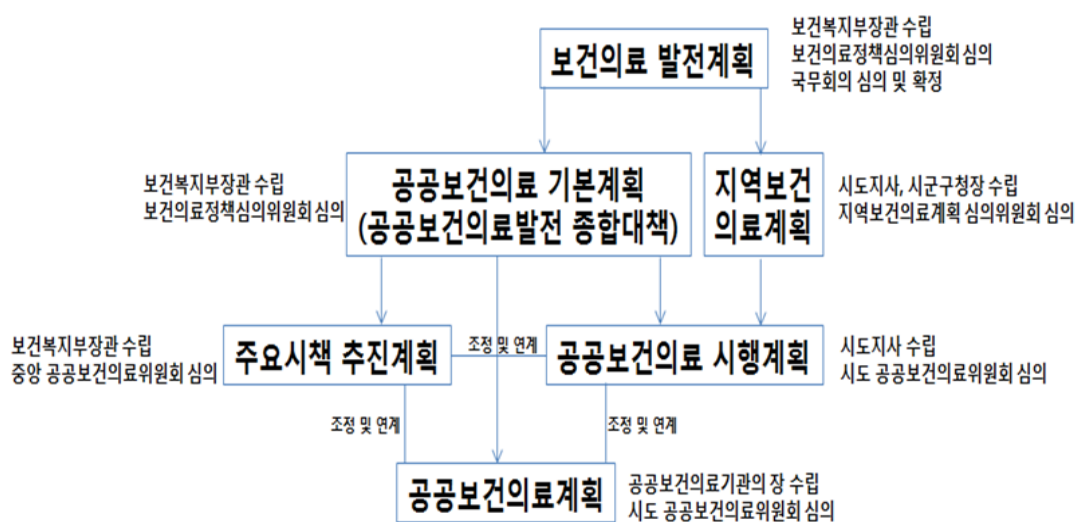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 시스템적 사고의 부재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 정책의 한계
 - 총합으로서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 정립 부재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 정립 모호
 - 연계 지점 포착의 어려움
- ▶ 공공보건의료 연계 관련 중앙과 지방 간 의사결정기전 부재
- ▶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의 체계적 분리

현황 및 문제점

- ▶ 연계를 하기 위한 자원 투입 및 기술 지원의 미흡
- ▶ 연계를 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자원의 절대적 부족
 - 연계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제한
-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한 적극적 사고 부재
 - 지방의료원과 지역보건기관은 지방정부가 관할
 - 보건의료가 제공되는 구체적인 현장은 지역임.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 관련 보건의료계획 간 관계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 관련 보건의료계획 간 관계

- ▶ 중앙 공공보건의료위원회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기초한 주요 시책 추진 계획 심의
-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의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겸할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연계체계와 관련된 주요 계획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임.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겸하는 것을 권장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 관련 보건의료계획 간 관계

-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 관련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시도 작성,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작성 지원)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 실행계획
 - 필수의료서비스 진료 의뢰 및 회송 계획
 - 퇴원환자 관리계획
 -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
 - 의료복지 연계, 진료정보교류 등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 지원계획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 관련 보건의료계획 간 관계

- ▶ **실행계획**
 -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권역 단위)
 -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중진료권 단위)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기초 단위)
- ▶ **실행계획 수립 총괄은 권역책임의료기관**
- ▶ **실행계획 수립 지원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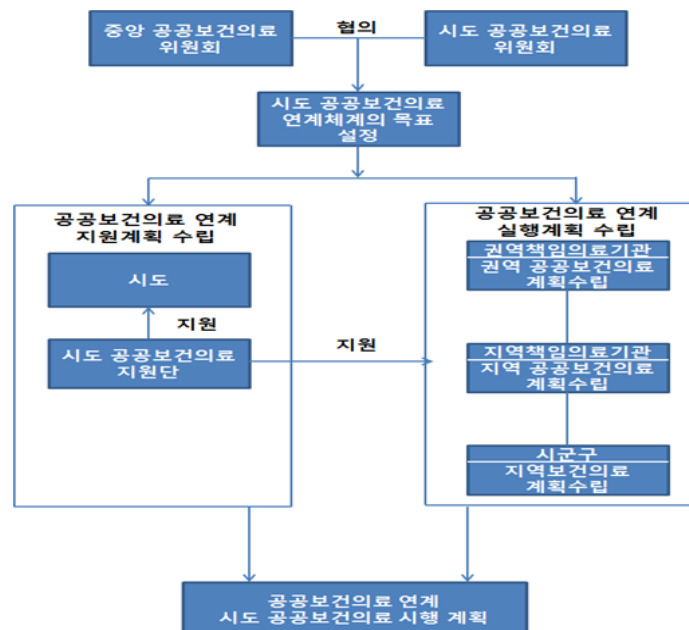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 관련 보건의료계획 간 관계

- ▶ **지원계획**
 - 시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계획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술 지원계획
- ▶ **시도가 지원계획 수립 총괄**
- ▶ **지원계획 수립 지원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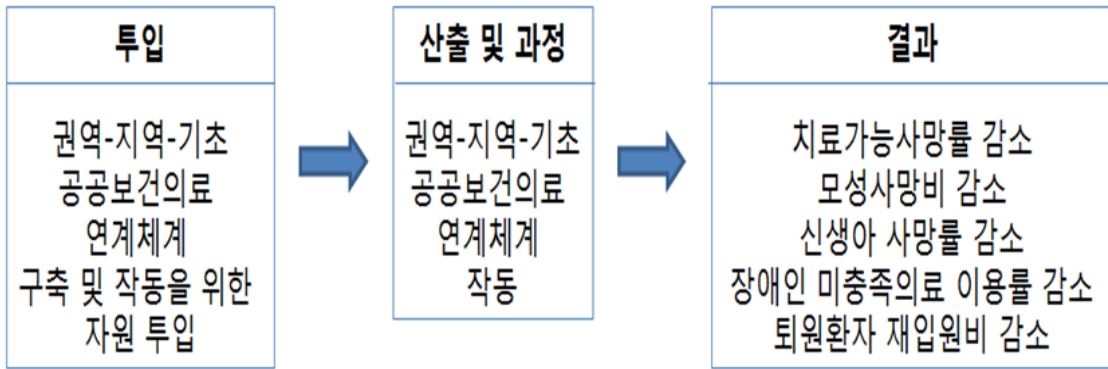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 관련 보건의료계획 간 관계

- ▶ 시행계획 수립은 목표에 근거해야 함.
- ▶ 시도별 목표 설정은 중앙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간 협의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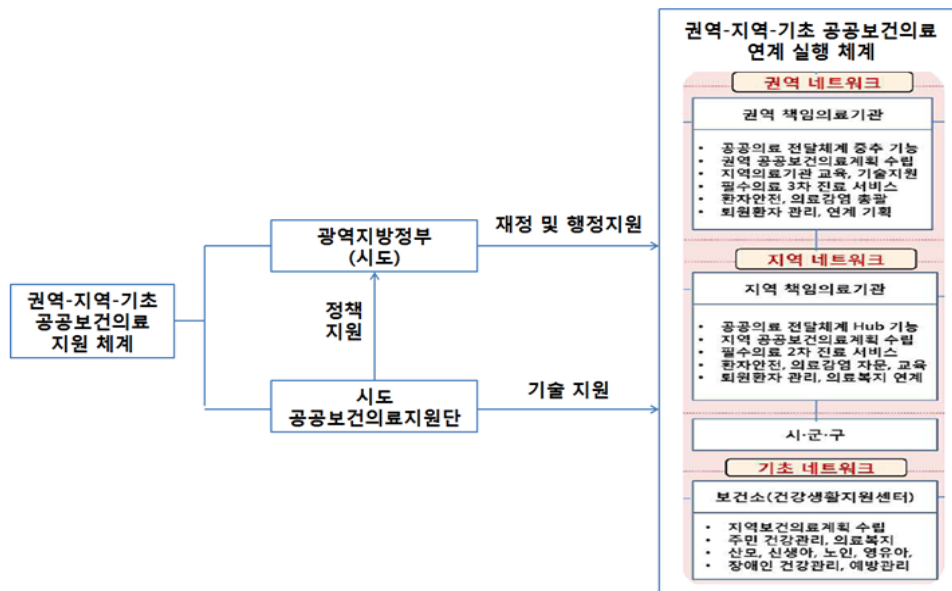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 관련 보건의료계획 간 관계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 실행체계와 지원체계 간 관계



시도 차원의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 실행체계와 지원체계 간 관계



시도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거버넌스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연계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결정
- 권역 단위의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연계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시도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거버넌스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사무국
-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필수의료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시도 기술지원단들 연계체계 구축
- 권역-지역-기초 공공보건의료 연계 실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조사 및 연구
- 필수의료 표준진료지침 개발
- 진료의뢰 및 회송 활성화, 퇴원 환자 연계 및 관리 방안 개발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복지 연계사업 방안 개발
-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추계 및 조달 방안 개발
- 교육훈련 수행 및 지원
- 협력사업 발굴 및 수행

시도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거버넌스

- ▶ 권역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본부
- 권역-지역-기초 공공보건의료 연계 실행체계 총괄
-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원내 협의체, 원외 협의체(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내 실무위원회 구성 시 이를 대체할 수 있음.)
- 권역 공공보건의료 협력 사업 수행

주요 쟁점

-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점
-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겸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구성되지 않은 광역지자체의 향후 대책

목차

-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관련
거버넌스
-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 양질의 표준진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위상과 역할 부족
- ▶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환자의 체계적 관리 미흡
- ▶ 기관 단위의 인력 및 의료 질 관리의 한계 봉착
- ▶ 국립대병원의 권역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 부족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 영역

▶ 진료협력

- 표준진료지침을 개발, 공유하여 양질의 적정진료 유도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내부에서의 필수의료분야환자의뢰 및 회송, 진료정보교류 강화

▶ 퇴원관리

- 책임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 수립 및 질병관리 교육
- 기초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협력기관과 연계 후 퇴원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기적 관리
- 취약계층 및 자가관리가 어려운 경우 보건의료복지 통합 연계 실시
- 책임의료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면 진료의뢰 및 회송, 진료정보교류의 단위가 될 수 있음.

▶ 교육 및 파견

-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의료인력 파견, 임상의료 교육 및 컨설팅 확대, 필수의료 분야 순환 수련 활성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기능강화

▶ 권역책임의료기관

- 원내 사업 부서의 강화: 공공의료본부 + 진료처, 사무국, 기획조정실 등에 산재해 있던 업무의 조정
-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족 기능 진단/개선: 의료진, 진료과간 협력 확대, 취약계층 대상 간병서비스 확충과 필요시 원무전담팀 구성, 필요시 공익병동 설치 등

▶ 지역책임의료기관

- 지역공공의료본부 구성: 진료지원체계, 협력체계, 의뢰체계 평가/지원
- 원내 사업 부서의 강화: 301보건의료협력센터, 사회사업실, 원무과, 진료행정과 등 산재한 업무 조정 협진 활성화를 위한 기획 포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족 기능 진단/개선: 의료진, 진료과간 협력 확대, 취약계층 대상 지원체계 확충 등

보건소의 기능 강화(안)

- ▶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퇴원환자 관리의 컨트롤 타워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필수의료 환자 등록 및 관리
-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자원 연계
- 구체적인 관리 서비스는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담당
- ▶ 보건의료복지 연계의 기초 단위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의원과의 연계를 통한 필수의료 관련 퇴원환자의 만성질환 관리 모니터링
- ▶ 기초 단위의 환자 의뢰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지속적 확충의 추진 주체

진료 협력 및 퇴원관리

- ▶ 필수의료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관리지침 개발 및 적용 확대
- ▶ 교육 및 파견 : 공동 컨퍼런스/연구 확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의료인 파견 및 교육체계 확립
- ▶ 초기 단계에는 참여하는 센터/과 별로 기본적인 환자 상황에 대한 평가와 초기 형태의 퇴원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성

원내 진료조정 체계 개발 필요

- 다양한 급/만성 질환의 포괄적 평가, 진료의 우선순위 설정, 지속적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진료지원체계의 구성이 필요함
- 응급 진료, 급성기 진료, 아급성기 진료, 재활 진료, 일상생활 지원이 원내에서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병원의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로 함

진료 협력 및 퇴원관리

- ▶ 책임의료기관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권역 내 책임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함.
- ▶ 권역-지역-기초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내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역할 수행
- 권역-지역-기초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지속적 모니터링 기반 확보
- 진료 연속성, 협진 네트워크, 의료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
- 연계체계 내 환자의 위험도 감소, 의료비 절감,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

보건의료복지협력체계

- ▶ 보건의료복지협력체계 운영 방안
- 개별병원이 운영하던 301협력사업 등을 광역수준의 사업으로 확대를 위한 권한/책임조정 필요
- 광역단위의 의료안전망의 점검/제도적 확충을 위한 노력 필요
- 병원 단위는 퇴원단계에서 사회경제적/심리적 중재 대상자 선별을 위한 절차와 지원체계 확보 필요

권역별 정부지정센터 현황

권역	국립대병원	응급센터	권역외상	권역심뇌	공공전문진료센터	고위험산모 산생아 통합치료센터	산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재활
					호흡기,관절염,어린이,노인			
자료 기준		2018	2017	2018	2016	2018	2017	
서울	서울대병원	권역			어린이	○		
경기	분당서울대	권역		○		○	○	
인천								적십자
강원	강원대병원	지역		○	호흡기, 어린이, 노인	○	○	○
충북	충북대병원	권역	○	○	호흡기	○	○	
대전충남	충남대병원	권역		○	관절염, 노인	○	○	○
전북	전북대병원	지역 (권역:원광대)	원광대	원광대	호흡기, 어린이, 노인	○	○	
광주전남	전남대병원	권역	○	○	어린이, 관절염	○	○	조선대
전남	화순전남대	지역						
대구경북	경북대병원	권역	○	○	호흡기(영남대), 관절염(대가대)		○	
경북	칠곡경북대	지역			어린이, 노인	○	○	
부산	부산대병원	지역	○		호흡기		○	
울산								
경남	경상대병원	권역	○(지정)	○	관절염	○	○	
	창원경상대	지역					○	
	양산부산대	권역			어린이	○	○	○
제주	제주대병원	지역		○	관절염		○	서귀포

필수의료관련 정책의료센터와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간 협력

▶ 권역책임의료기관 권역정책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필수 설치
-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기 설치된 경우 권역 내 치료결과 및 진료권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 설치 여부 판단
-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책의료센터는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공공의료본부와 원내 협의체 구성
- 퇴원환자 연계 프로토콜 협의
- 환자 스크리닝 및 평가결과 공유 및 다학제 진료를 위한 치료계획 협의
- 지역 연계 및 정보공유 협의

필수의료관련 정책의료센터와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간 협력

▶ 권역책임의료기관 권역정책의료센터

-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설치된 지역정책의료센터와의 진료 협력 체계 및 기술지원체계 운영
- 지역-기초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와의 결합을 통한 대상 질환별 퇴원환자관리 및 보건의료복지협력 체계 운영
- 권역 내 정책의료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시도 지원단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정책의료센터의 장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권역 차원의 필수의료 관련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관련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
-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설치된 권역정책의료센터의 장도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필수의료관련 정책의료센터와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간 협력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정책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센터 필수 설치
-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원내 협의체 구성
- 퇴원환자 연계 프로토콜 협의
- 환자 스크리닝 및 평가결과 공유
- 지역 연계 및 정보공유 협의
-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설치된 권역정책의료센터와의 진료 협력 체계 운영
- 기초 단위 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시행
- 기초 단위의 일차의료, 공공보건 연계체계와의 결합을 통한 대상 질환별 퇴원환자관리 및 보건의료복지협력 체계 운영

공공보건의료 연계 실행을 위한 지원조직의 역할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작동 과정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수립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기초 단위 기관들의 진료협력 및 퇴원관리 계획 수립 지원
-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표준진료지침 및 퇴원환자 케어 플랜 개발 및 적용 지원
-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공동 운영
- 권역 내 강사 pool 운영 및 강사 지원
- 주기적인 교육 수요 조사를 통한 권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주요 쟁점

- ▶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을 지원 방안
- ▶ 권역-지역-기초 간 연계를 위한 기타 사업 영역